

의안번호	제 232 호
의결연월일	2005. 6.30

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15 신영균의원외 12

나. 회부일자 : 2005. 6. 17

다. 상정일자 : 2005. 6. 22

제124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사회산업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요지(대표발의자 : 신영균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당해연도 발생이자와 전년도 집행잔액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연간 발생 이자로는 실질적인 농업전문 인력 육성에 효율적 지원이 지난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이자수익금과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사업목적 지정 출연금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.(안11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용억)

-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기금액 383백만원을 적립하여 연간 발생하는 이자수입 15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- 사업 내역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으며, 사업비 부족으로 본 조례의 운용 목적인 「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지원한다」는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목적을 지정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사업에 사용하게 하여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사료됨.

### 4. 질의 · 답변요지

- 생략

#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